

중소기업 *focus*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법인파산·간이회생제도(1)

- 법인파산제도의 절차와 유의사항 -

발간주제 27호 : 법인파산제도의 절차와 유의사항
 28호 : 간이회생제도의 개정(안) 주요내용

□ 기업파산, 법인파산제도의 정의

- 법인파산은 회사가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을 경우 법원의 감독에 따라 회사에 대한 개별채권자들의 채권 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법원의 감독에 따라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를 조사확정하고,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제도(구, 화의법)
- ☞ 법인파산이란 회사가 경영상 파탄상태에 빠졌을 때 그 총재산으로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는 재판상절차를 의미함

□ 법인파산제도의 목적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에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주, 주주, 기본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조)

1

하나. 법인파산제도의 신청과 절차

□ 법인파산의 신청 및 이용대상

법인파산 신청대상	법인의 경우 이사, 합병·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 등 · 채권자 : 기업의 채권자들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채무자(법인) : 스스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 및 신탁,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음
파산제도의 이용대상	채무초과,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는 기업을 정리하고자 할 경우 기업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 지급불능 : 채무자의 재산·노무·신용으로써는 총채권자의 채권을 완제하기가 불가능한 상태
- ☞ 채무초과 :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재산만이 변제력의 기초가 되는 법인일 경우에만 파산원인으로 성립)

□ 법인파산절차의 필요성

- 법원에 의한 투명한 파산절차를 진행하여 이러한 위험성을 방지하고, 선고이후 수표금의 지급거절로 인한 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50조, 사기파산죄) :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 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정수표단속법 위반의 부담을 면하는 부수효과 이외에 대표이사, 대주주 역시 회사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결과 개인파산상태가 발생할 것인바 그 면책절차에서 유리한 환경조성에 그 필요성과 의의를 두고 있음

○ 법인파산 절차의 장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책임에 대한 면제	· 법인기업이 파산신청을 한다면 파산선고후부터는 수표의 부도발생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 위반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음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사건화의 방지	·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자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은데서 발생하는 회사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이로인한 횡령·배임·강제집행면탈죄 등 각종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의 사건화를 방지하고 책임화를 면하게 해줄 수 있음
조세혜택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으며(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1호), 미납된 조세채무(양도세, 부가가치세 등)는 법인이 조금의 재산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파산절차를 통해 미납된 조세를 우선 변제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거래회사에 대한 세금감면	· 법인파산을 함으로써 거래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면 거래처회사는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법인기업에 대한 공평한 분배변제	· 채권자는 기업에게 파산원이 있을 때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기업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환가 분배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음

- 회사가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였으나 파산절차없이 방치하여 사실상 도산할 경우
 - ☞ 수표를 발행하였을 경우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수표발행자인 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죄책을 면할 방법이 없고
 - ☞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아 회사 채권자들로부터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그 결과 횡령, 강제집행면탈죄 등 각종 형사고소와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각종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음

2. 들. 법인파산절차와 유의사항

□ 법인파산(기업파산)의 절차별 기능

파산선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며,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직원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필요한 증거조사를 거쳐 신청인의 자격, 파산원인의 존부를 심리
파산관재인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 파산관재인이며,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처분할 권한을 가짐으로 통상 변호사 가운데서 선임이 됨
제1회 채권자 집회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회 채권자 집회를 개최하여 파산관재인의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위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의 수를 의결할 수 있으며, 영업의 폐지 또는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음

파산 선고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 사실이 있고, 예납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파산선고를 한다는 취지를 선언하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대표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모든 관리 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위임하므로써 실질적인 업무에 직접적인 관계를 하지 않아도 됨 · 환가, 배당 및 소송 등에 대한 문제까지 모두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처리
채권 조사	- 채권조사는 장래 배당의 기초가 될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임 ·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채권 및 그 이후 신고된 것이라도 채권조사기일에서 함께 조사를 함 ·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은 즉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그 결과가 기재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원에게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
환가	-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후 즉시 파산재단의 소속 재산의 환가에 착수 · 환가절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의매각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며, 동산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가격하락의 우려가 많으므로 신속하게 매각하여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권자와 협의하여 임의매각을 시도하여야 함
배당 및 종결	채권조사를 통해 채권액이 확정되면 환가된 금원을 채권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되는 절차이며, 최후 배당을 마치면 채권자집회를 열어 계산보고를 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법인파산종결과 함께 법인은 소멸되므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법인의 책임 역시 소멸됨
동시폐지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와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폐지를 하며,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 법인은 소멸하지만,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존속하며, 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파산절차는 종료 됨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 ②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금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 법인파산 절차

- 법인파산을 선고하면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제1회의 채권자집회기일,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일 등을 정하여 공고하고, 이러한 절차를 통해 회사의 부채와 자산을 정리하고, 채권자에게 공평한 배당을 한 후 최종적으로 폐쇄등기촉탁을 함으로써 법인은 청산됨

□ 법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대표의 책임범위의 예시

법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법인이 소유재산·근로자·미지급임금·국세체납분이 없고 단지 상거래 채무와 금융권채무, 연대보증채무만 있는 경우	법인파산을 권유하기도 하나, 법인파산을 진행하기 보다는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로 간주되어 법인과는 상관없이 개인인 대표이사는 자신의 연대보증채무 그리고 개인적인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파산, 면책신청을 통해 채무를 정리할 수 있음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법인이 미지급임금·퇴직금이 있고, 근로자로부터 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건송치되고, 국세·보험료 등이 체납된 경우	이 경우는 반드시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법인파산 신청을 통해 회사가 속히 도산처리되도록 한 후, 근로자들로 하여금 체당금을 지급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면서, 근로자들이 진정·고소제기를 취하도록 해야 법인의 대표이사는 처벌을 면할 수 있음
근로자가 체당금 지급신청을 해서 체당금을 지급받았으나 여전히 변제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이 남아있는 경우	법인은 이미 파산선고를 받고, 청산종결되어 등기폐쇄되었으므로 근로자는 더 이상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노동부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나면 대표이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1항(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주체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법인인 회사이므로 노동부는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인 회사에 대하여 근로자를 대위해 미지급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음. 즉 노동부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 파산절차시 유의 사항

예납명령 및 예납금납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산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고,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파산절차의 비용을 예납하도록 하고 있음 ☞ 예납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
파산신청서 작성 및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산신청은 서면으로 작성하며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됨 ☞ 파산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실질적 요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이 경우 지급불능사실이나 채무초과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 파산신청의 대상인 기업이 계속적인 기업활동을 예정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계속기업가치 또는 청산가치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게 됨 · 통상적으로 파산신청 전에는 가결산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세부명세서 또는 계정별 원장 포함)를 제출
대표자 심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산신청시에는 민사소송법이 중용되므로 구두변론을 열어 증인신문을 할 수도 있으나 구두변론 없이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임 ☞ 법인의 경우 대표권을 가진 자가 출석하여 법관의 질의에 대하여 신문절차가 진행되며, 대표자 심문과정에서는 주로 파산관재인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고, 필요한 경우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문함
파산신고와 면책 동시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파산의 목적이 면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고하여 절차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신고서를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법인폐업

- 법인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영업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을 법인의 영업을 중지·중단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하는 것으로,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안하겠다는 의미에 해당함
 - 이는 법인파산과 달리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법인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하며 살아있는 것일 뿐 아니라, 법인의 금융기관, 거래처, 체납국세, 체납보험료, 임금, 퇴직금 등에 대한 채무부담은 남아 있는 것임
 -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법인은 모든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법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임
- 법인파산과 폐업의 신고와 같이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국세, 4대보험료, 임금, 퇴직금, 금융기관채무, 상거래 채무 등을 정상적으로 소멸하기 위해서는 폐업신고가 아닌 파산절차를 활용하여야 함
 - 법인파산은 강제집행 및 가압류, 가처분의 효력을 잃게 함. 즉,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48조1항은 파산채권에 기초하여 법인파산신고시 파산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며 단,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음.

♣ 본 자료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소식과정보(발간책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발행인
윤종일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홈페이지
www.gsbc.or.kr

자료문의
평가조사실
031-259-7365

「중소기업 포커스」는 경기도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정보 자료로,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